삼 척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시 보

제1299호 2023. 9. 22.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3-149호 삼척시 초곡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2023-15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군도5호선) (산양2리 ~ 종현동) 소교량 개축공사 ---------- 5

○ 삼척시 고시 제2023-153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하천) 지형도면 고시 --- 9

○ 삼척시 고시 제2023-154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10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23-1563호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한 입법예고 ---------- 11

○ 삼척시 공고 제2023-1565호 삼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16

○ 삼척시 공고 제2023-158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53

공람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3-149호

삼척시 초곡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고시

삼척시 초곡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을 수립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9일

삼 척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삼척시 초곡항 어촌뉴딜300사업

2. 사업의 목적

낙후된 어촌·어항이 보유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새로운 소득기반 창출로 침체된 어촌마을에 활력을 도모

3. 사 업 비 : 12,398백만원(국비 8,341, 도비 1,072, 시비 2,502, 자부담 483)

4.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3년간)

5. 사업구역 및 내용

1) 사업의 구역 : 삼척시 초곡항 일원 및 배후부지

2) 사업의 내용

구분	세부사업	사 업 내 용
공통사업	초곡항 어항시설 정비	물양장 확충, 어항배수체계 정비, 계절성 어구보관창고 신축, 항내 준설
특화사업	초곡마을 정주환경 개선	마을골목길 경관개선, 마을 입구 쉼터 및 녹지공간 조성
	초곡푸른캠프 조성	황영조기념공원 경관개선
	초곡바다놀이터 조성	초곡바다살롱 신축
	촛대바위활력거리 조성	초곡먹방 조성(위판장 리모델링), 새어촌 건설 복지회관 리모델링, 자연산횟집 현대화 리모델링
	범죄예방환경 개선	주거지 및 관광객 안전강화, 방범시설물 확충
S/W사업		지역주민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역협의체 운영 등

6. 변경내용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본계획 당초 사업량	기본계획 당초 사업비(백만원)	기본계획 변경 사업량	기본계획 변경 사업비(백만원)	사업계획 사업량	사업계획 사업비(백만원)	비고
Ⅰ 공공사업	어항시설 정비	피해시설	TTP보강		130m	975	-	-	-	-	
		계류시설	물양장화홍		960㎡	714	999㎡	2,040	999㎡	2,040	
			어항배수체계정비(LID)		370m	248	214m	113	214m	113	
		기능편익시설	생활상 마구보관함고 신축		140㎡	252	118㎡	151	118㎡	151	
		기타어항시설	항내준설		1식	500	1식	486	1식	486	
	Ⅰ 소계					2,689		2,790		2,790	
Ⅱ 특화사업	관광진흥	관광매개	해안촌민실 복지회관 리모델링	주민공동 이용시설	132㎡	264			132㎡	264	
				아촌계 관선	259㎡	518			259㎡	518	
			자연산횟집 현대화 리모델링		480㎡	960			480㎡	960	
			소규모경관조성 (위판장 리모델링)	화장실(여) 및 루프탑쉼터	24㎡ (200㎡)	286			24㎡ (200㎡)	286	
				먹거리 판매시설	109㎡	387			109㎡	387	
	정주개선	문화복지	마을입구 쉼터 및 녹지공간 조성		2,038㎡	530			2,038㎡	530	
	관광진흥	경관개선	황영조 기념공원 경관개선		9,534㎡	1,239			9,534㎡	1,239	
	정주개선	주거개선	마을공동집 경관개선		1식	117			1식	117	
	정주개선	주거개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1식	214			1식	214	
	관광진흥	관광매개	소규모다목적 용신축	관광매개 시설시설	308㎡	1,531			308㎡	1,531	
				미니샵	106㎡	527			106㎡	527	
	Ⅱ 소계					6,573				6,573	
Ⅲ 5개사업	로컬크리에이터 시범사업				1식	250			1식	250	
	역량강화	지역주민교육	동아리,공동체 학화교육		1식	162			1식	162	
		컨설팅	컨설팅, 체험프로그램 및 상품개발		1식	138			1식	138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		1식	151			1식	151	
	시작팀의제		운영비등		1식	55			1식	55	
	고용창출		사무장 채용		24개월	43			24개월	43	
	Ⅲ 소계					799				799	
Ⅳ 사업지원	위탁비	수수료			1식	133			1식	133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식	333			1식	333	
	기본 및 실시설계	공통사업(어항시설 등)			1식	392			1식	392	
		특화사업(건축, 조경, 토목, 전기통신 등)			1식	712	1식	611	1식	611	
	건설사업관리	감리용역			1식	663			1식	663	
	기타경비	홍보크리에이터 보수 및 기타 운영비			1식	78			1식	78	
		공모운영비			1식	12			1식	12	
		실행의도구현 운영비			1식	14			1식	14	
	Ⅳ 소계					2,337		2,236		2,236	
어촌뉴딜 합계(Ⅰ+Ⅱ+Ⅲ+Ⅳ)						12,398				12,398	

7. 사업의 효과

어촌·어항 재생을 통해 어촌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여 해양관광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 발전 실현에 기여

8.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9. 기 타

기본계획서는 삼척시청 해양수산과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10. 문 의

삼척시청 해양수산과(☎ 033-570-3415)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033-650-3251)

삼척시 고시 제2023-15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도5호선(산양2리~종현동) 소교량 개축공사(하가3교, 하가4교)]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91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2일

삼 척 시 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m)
변경	시도	군도5C	소로2-군도5C	강원도 삼척시 산양리	29,717	소로1-지416 산양리 140-10도	원덕읍 산양리 297-1도		3,717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군도5호선 교량 2개소(하가3·4교) 개량
3. 사업 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24. 8.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고시 완료일까지
   - ○ 열람장소 : 삼척시청 건설과 (033-570-3489)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6. 지형도면 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구간	면적 (㎡)	연장 (m)	지형도면 고시이유
변경	시도	제5호	·기점: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140-10 ·종점: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297-1	29,717	3,717	군도5호선 교량 2개소 (하가3·4교) 개량

○ 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원도 삼척시 건설과 토목부서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최근고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군5C	8	보조간선도로	3,717	원덕읍 산양리 140-10	원덕읍 산양리 297-1	일반도로		2010. 7. 16. (삼척시고시 제48호)	산양화가길, 시도5호선 (2020. 6. 19., 삼척시-97)
변경	소로	2	군5C	8~9.5	보조간선도로	3,717	변경없음	변경없음	일반도로			시도 5호선

나.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군5C	소로2-군5C	• 일부구간 선형 변경 - 폭: 8m → 8~9.5m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 군도5호선상 교량 2개소(하가3·4교) 개량

8.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시점: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140-10
- 종점: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297-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군도5호선(산양2리~종현동) 소교량 개축공사 [하가3교, 하가4교]

다. 면적 또는 규모

- 연 장 : L = 152m
- 폭 원 : B = 8.0~9.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삼척시장(건설과장)
- 주소: 삼척시 중앙로 296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8.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도로구역결정(변경) 편입용지조서와 동일함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구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붙임서류 : 1. 토지세목조서(붙임)
2.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열람장소 비치)

[붙임1]

토지세목 조서

■ 하가3교

번호	위치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지분	소유권이외의 권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원덕읍 산양리	240-2	도	166	112	-	삼척시	-	-	-	-
2	원덕읍 산양리	240-1	도	456	59	-	국(건설교통부)	-	-	-	-
3	원덕읍 산양리	606	도	341	228	-	삼척시	-	-	-	-
4	원덕읍 산양리	240-3	도	11	8	-	삼척시	-	-	-	-
5	원덕읍 산양리	240	답	2,236	13	태백시 문곡동 2-3	민•천	-	-	-	-
6	원덕읍 산양리	1367-4	천	280,342	109	-	국(건설교통부)	-	-	-	-
7	원덕읍 산양리	산233-1	도	100	48	-	삼척시	-	-	-	-
8	원덕읍 산양리	607-1	도	949	53	-	국(건설교통부)	-	-	-	-
9	원덕읍 산양리	609-1	도	473	113	-	삼척시	-	-	-	-
10	원덕읍 산양리	1367-38	도	83	38	-	국(건설교통부)	-	-	-	-
11	원덕읍 산양리	산233	임	10,391	18	서울 노원구 상계동 173-1	민•태	-	-	-	-
합 계				295,548	799	-	-	-	-	-	-

■ 하가4교

번호	위치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지분	소유권이외의 권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원덕읍 산양리	257-1	도	256	91	-	삼척시	-	-	-	-
2	원덕읍 산양리	261-1	도	1,855	75	-	국(건설교통부)	-	-	-	-
3	원덕읍 산양리	1367-78	도	17	1	-	국(건설교통부)	-	-	-	-
4	원덕읍 산양리	249-1	도	62	47	-	삼척시	-	-	-	-
5	원덕읍 산양리	1367-4	천	280,342	152	-	국(건설교통부)	-	-	-	-
6	원덕읍 산양리	248	답	1,569	17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	민•운	-	-	-	-
7	원덕읍 산양리	248-1	도	431	288	-	삼척시	-	-	-	-
8	원덕읍 산양리	1367-36	도	126	75	-	국(건설교통부)	-	-	-	-
9	원덕읍 산양리	245-1	도	580	6	-	삼척시	-	-	-	-
합 계				285,238	752	-	-	-	-	-	-

※기타(물건 등): 위 토지 상에 소재한 지장물 등 일체를 포함 끝.

삼척시 고시 제2023-153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하천)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하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군도5호선) 결정' 및 '하천공사시행계획(교곡천)'의 고시(이상 2023. 9. 22.)로 각각 의제·변경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하천)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2일

삼 척 시 장

가.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비 고
소로2-군5C	원덕읍 산양리	폭 8~9.5m / 연장 3,717m	군도 5호선
하천②(교곡천)	근덕면 교가리	연장 1,720㎞ / 폭 13~66m / 면적 61,663㎡	근덕도시지역
하천⑨(교곡천)	근덕면 교곡리	연장 1,859㎞ / 폭 34~64m / 면적 98,362㎡	비도시지역

나. 지형도면: 삼척시청 도시과 비치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 게재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고시 제2023 - 15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 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9. 22.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352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 유	고시일	부여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104-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352	20230922	신규부여	20090826	행정구역명 (도계리,상덕리) 복합활용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노곡면 하월산리 5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노곡면 노곡로 13-78	20230922	신규부여	20090826	행정구역명 (노곡면)활용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520-7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안길 496-1	20230922	신규부여	20090826	행정구역,위치활용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삼척시 공고 제2023- 호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을 3년, 한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상담 복지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 변경

- 현행 : 3년(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개정 : 5년 이내(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삼척시장(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사회복지과(청소년수련관)
- 전화 : 033-570-4490
- FAX : 033-576-0532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삼척시 누리집(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영 등) ①·② (생 략)	제5조(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위탁 기간의 연장은 계약 기간의 사업추진과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1회 연장이후 위탁 대상자가 없을 때는 기존에 운영하던 단체나 법인에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붙임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3- 호

「삼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도로법」 제52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으로 속해 있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와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허가 업무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1조, 안 제3조)

나. 연결허가의 신청, 사전확인, 허가기준, 금지구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7조)

다. 변속차로, 부가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길어깨, 부대시설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12일**까지 삼척시장(참조 : 건설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건설과

2) 전화 : 033-570-3482

3) 팩스 : 033-570-3144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삼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삼척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와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분석 등을 포함할 것)
2. 변속차로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 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작성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7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신청서에 연결하려는 시설이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7조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5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로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 구간
2. 종단(縱斷) 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

깥쪽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도로로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 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8조(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 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같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橫斷) 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9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10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 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U형 측구(側溝)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汚水) 또는 빗물이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12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붙이거나 시선유도표지등을 설치할 것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

가로 설치할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3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등의 노면이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 및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4조(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울타리, 낙석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맞게 설치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은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5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도 면 명	작 성 요 령
위 치 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 시설물의 위치 표시
평 면 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점용지 경계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류화시설(導流化施設: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 테이퍼, 부가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그 밖의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종 단 면 도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測點)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 단 면 도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 폭 양쪽으로 연결 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 조 물 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 대 공 사 도	변속차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2]

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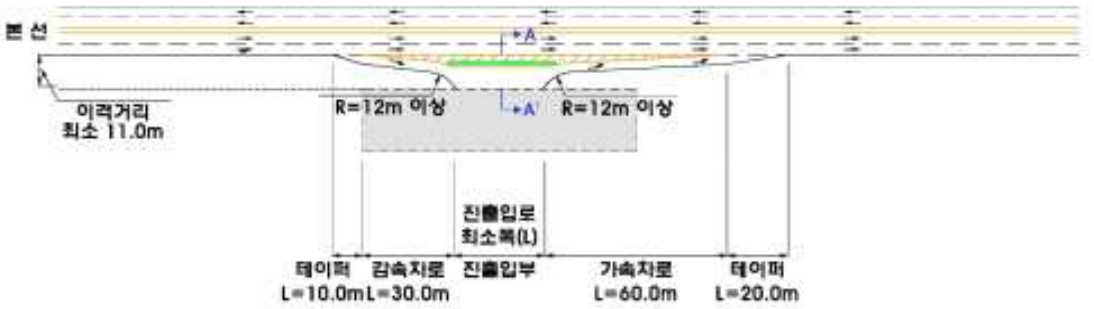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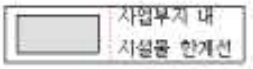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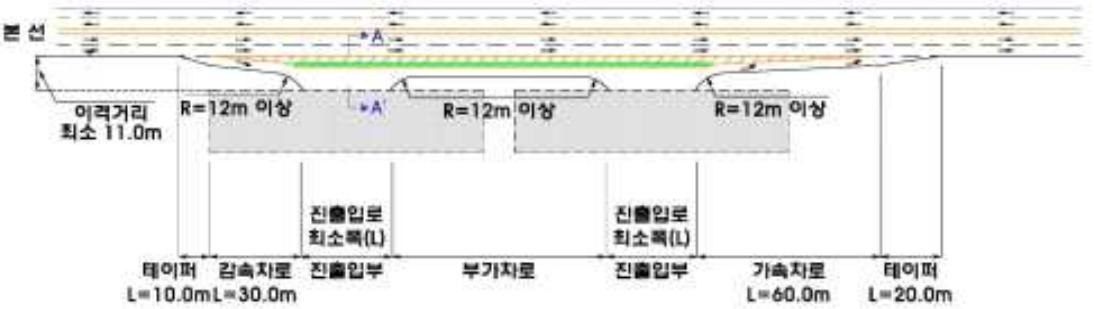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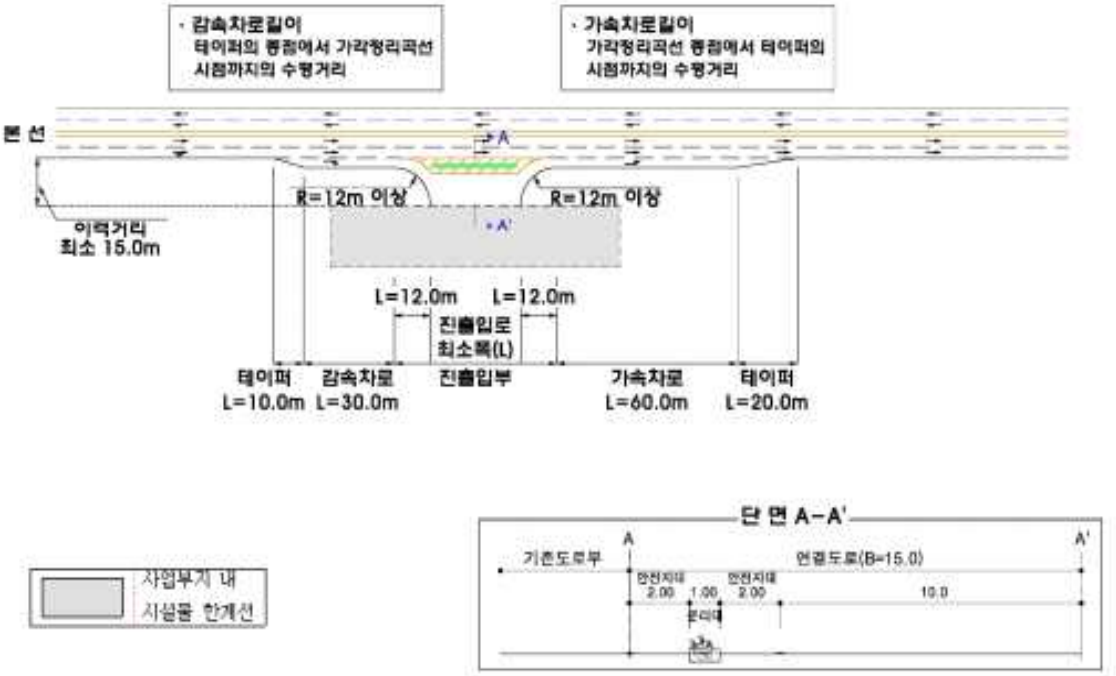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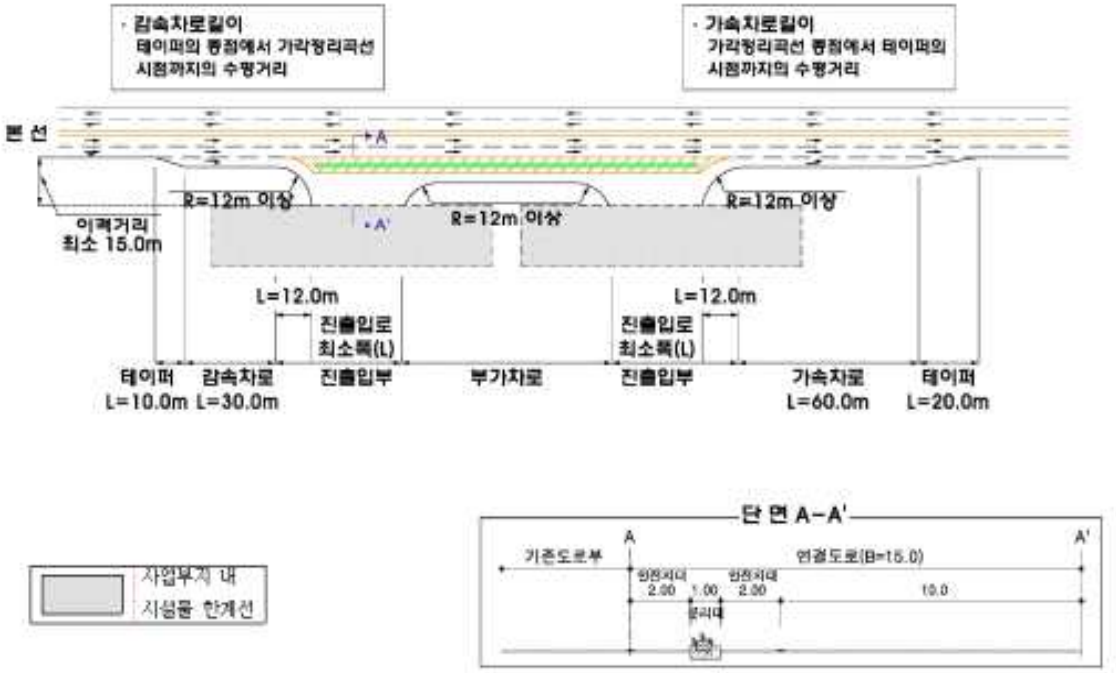

3.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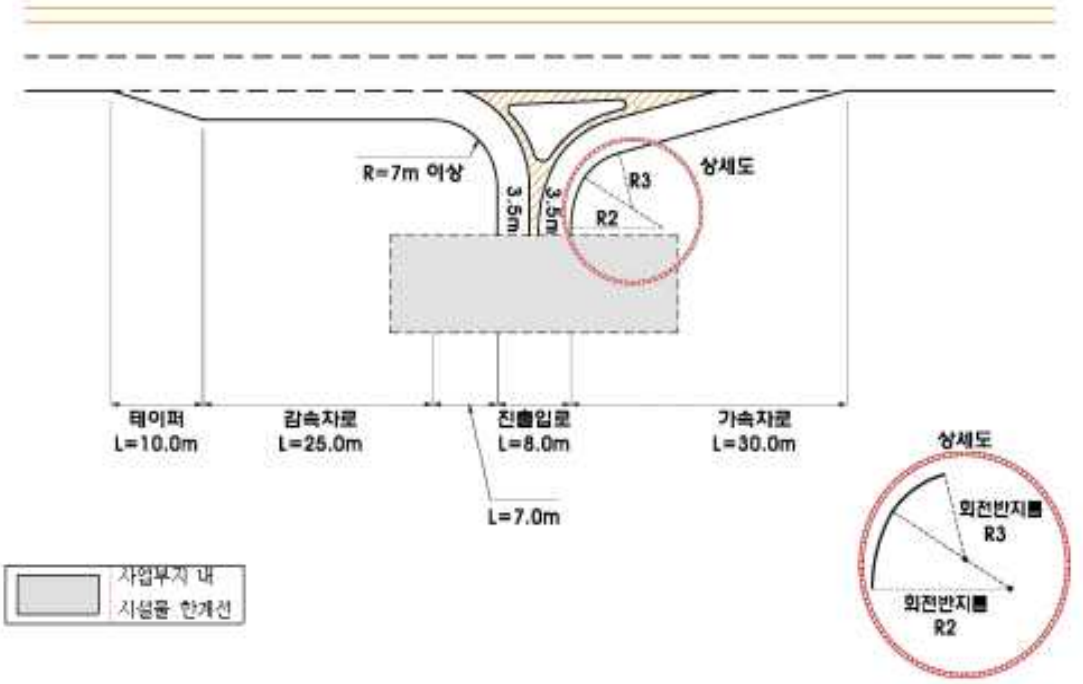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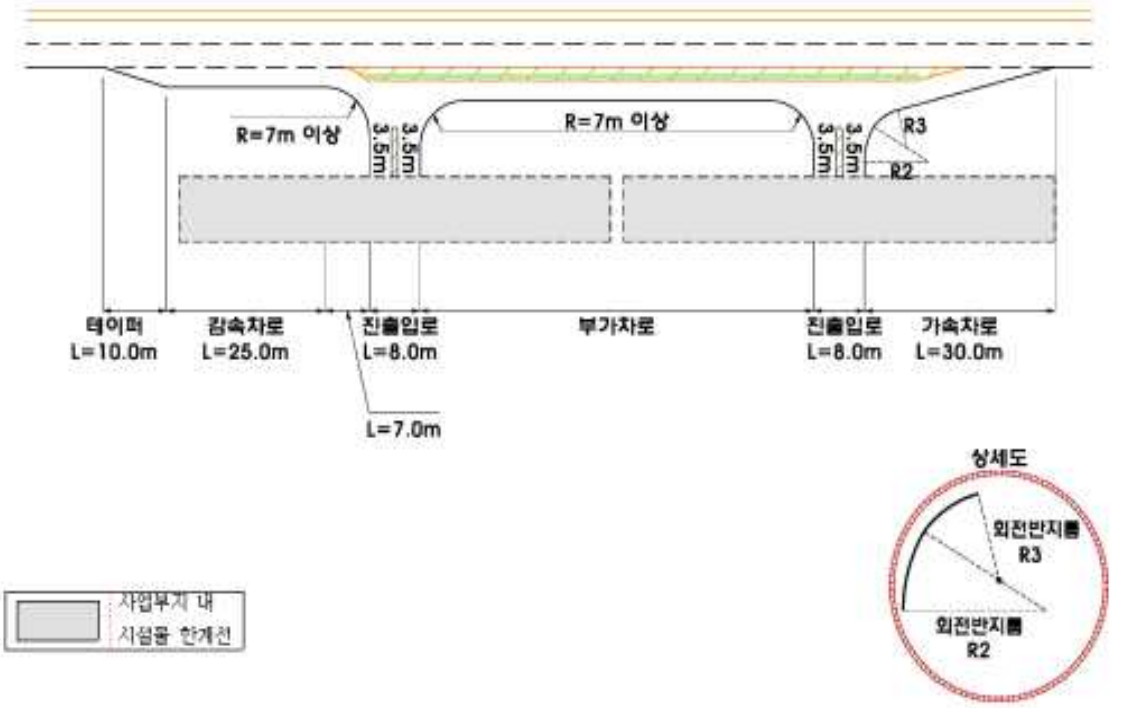

4. 도로의 모서리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代替) 설치

가. 곡선 반지름(R_4) 5미터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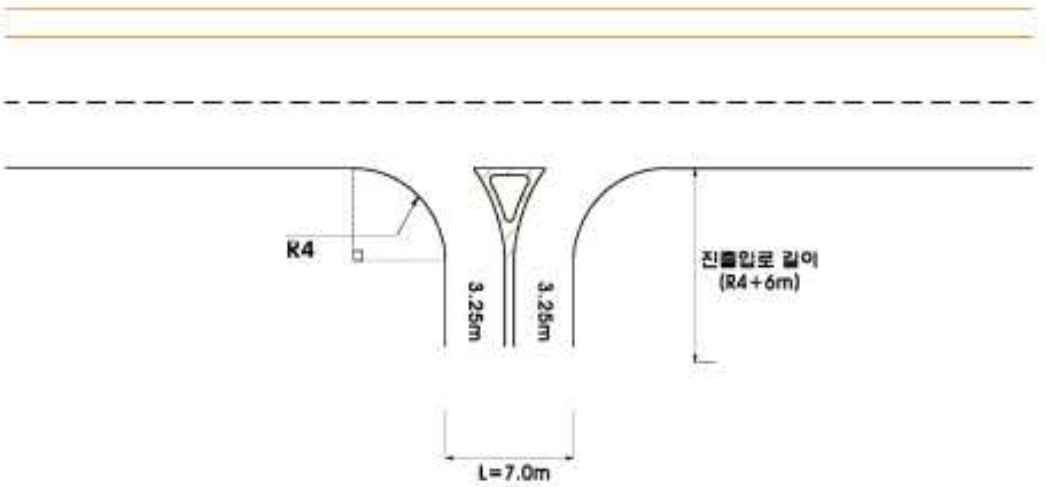

나. 곡선 반지름(R_4) 3미터 이하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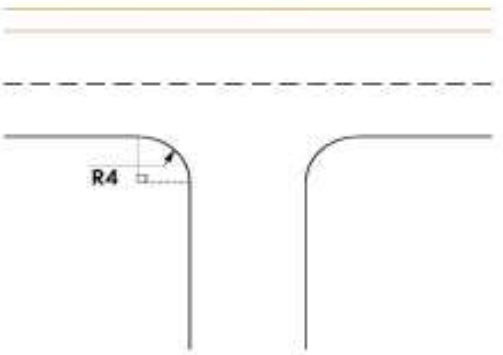

비고

1. 위 표 중 R은 곡선반지름,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m)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위 표 중 이격거리는 본선 차도(길어깨를 제외한다)의 바깥쪽 차선과 사업부지 내 건축한계선 등 본선 차량 통행의 시야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간의 최소 거리를 말한다.
4. 위 표 중 제1호와 제2호에서 진출입로 최소 폭(L)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20m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0m로 한다.

가. 별표 5 제1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나. 별표 5 제2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3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5. 위 표 중 제3호가목과 제4호가목은 분리대를 교통섬의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6. 위 표 중 제3호에서 곡선 반지름 R_2, R_3의 크기는 가속차로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며 그 최소 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가속차로의 길이(미터)	R_2(미터)	R_3(미터)
30	10	7
25	7	5
20	7	5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7조제1호 관련)

(단위: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비 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별표 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7조제3호 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차선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50	25	40
60	40	60
70	60	85
80	70	100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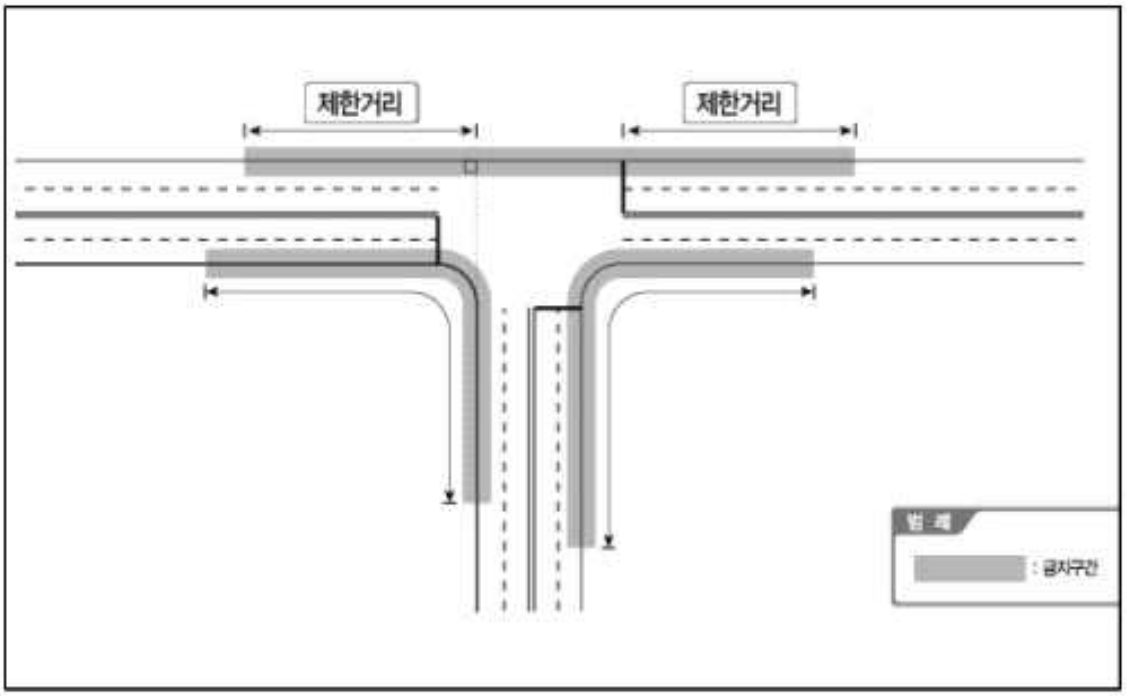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감속차로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10	20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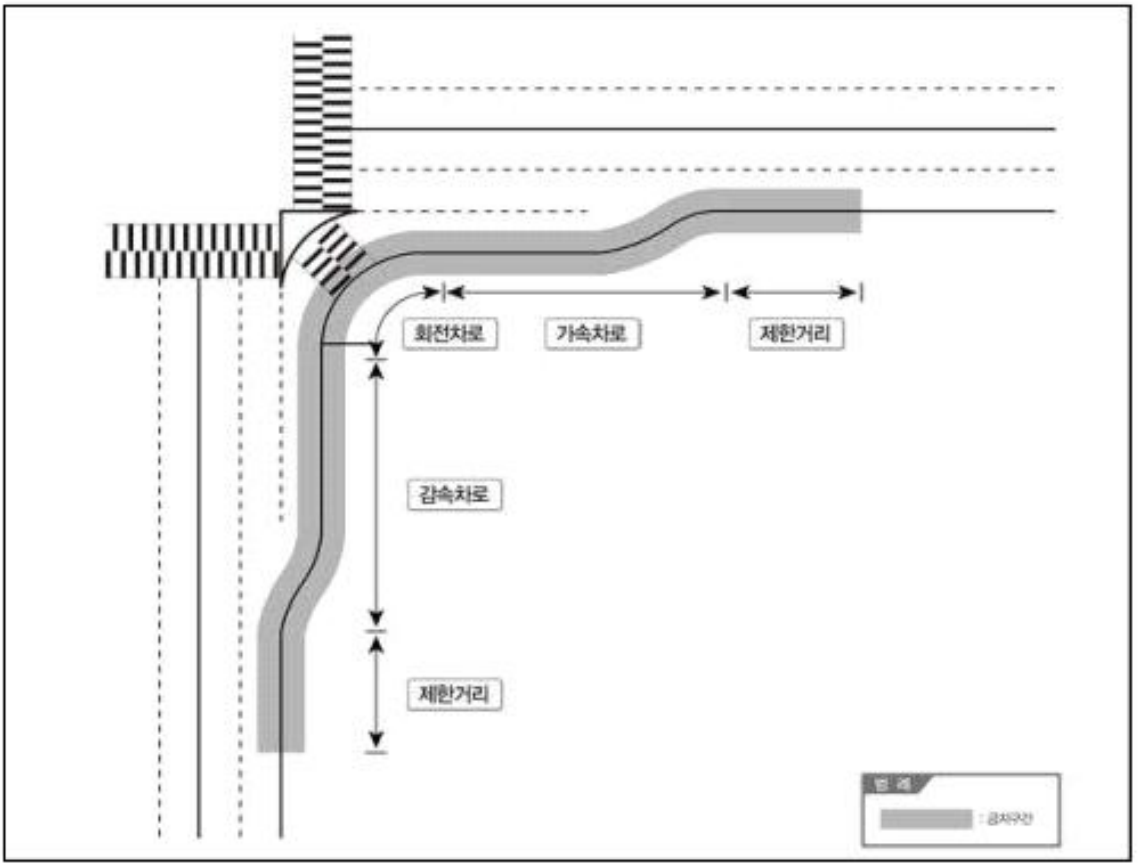
회전차로
가속차로
제한거리
감속차로
제한거리
범례
: 금지구간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60	45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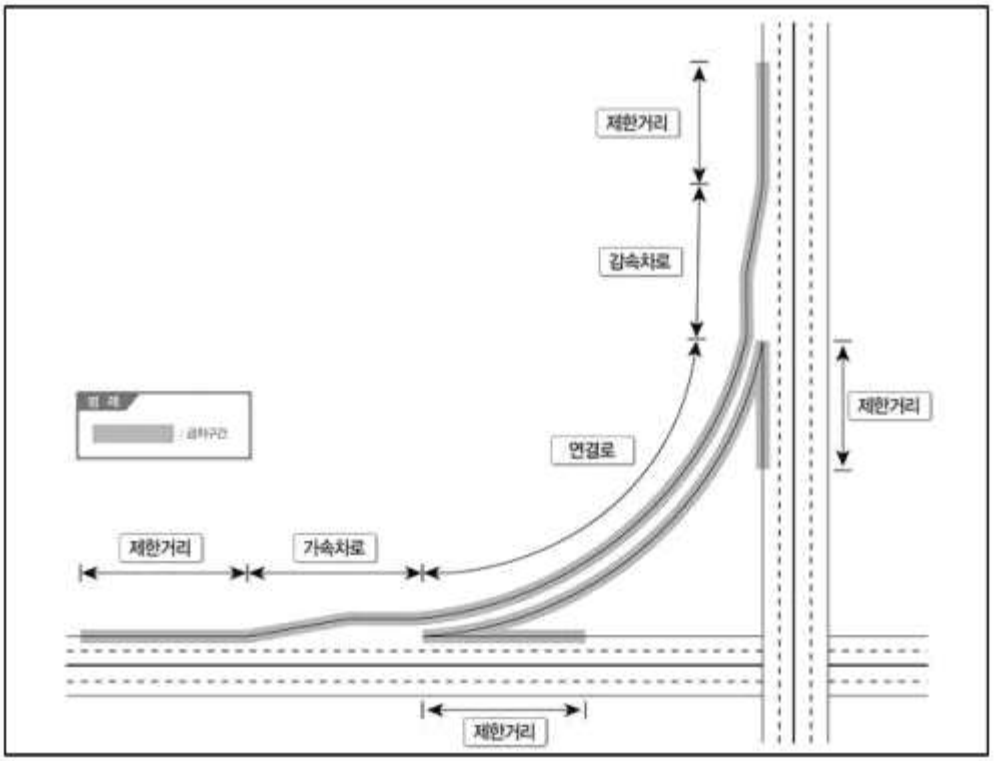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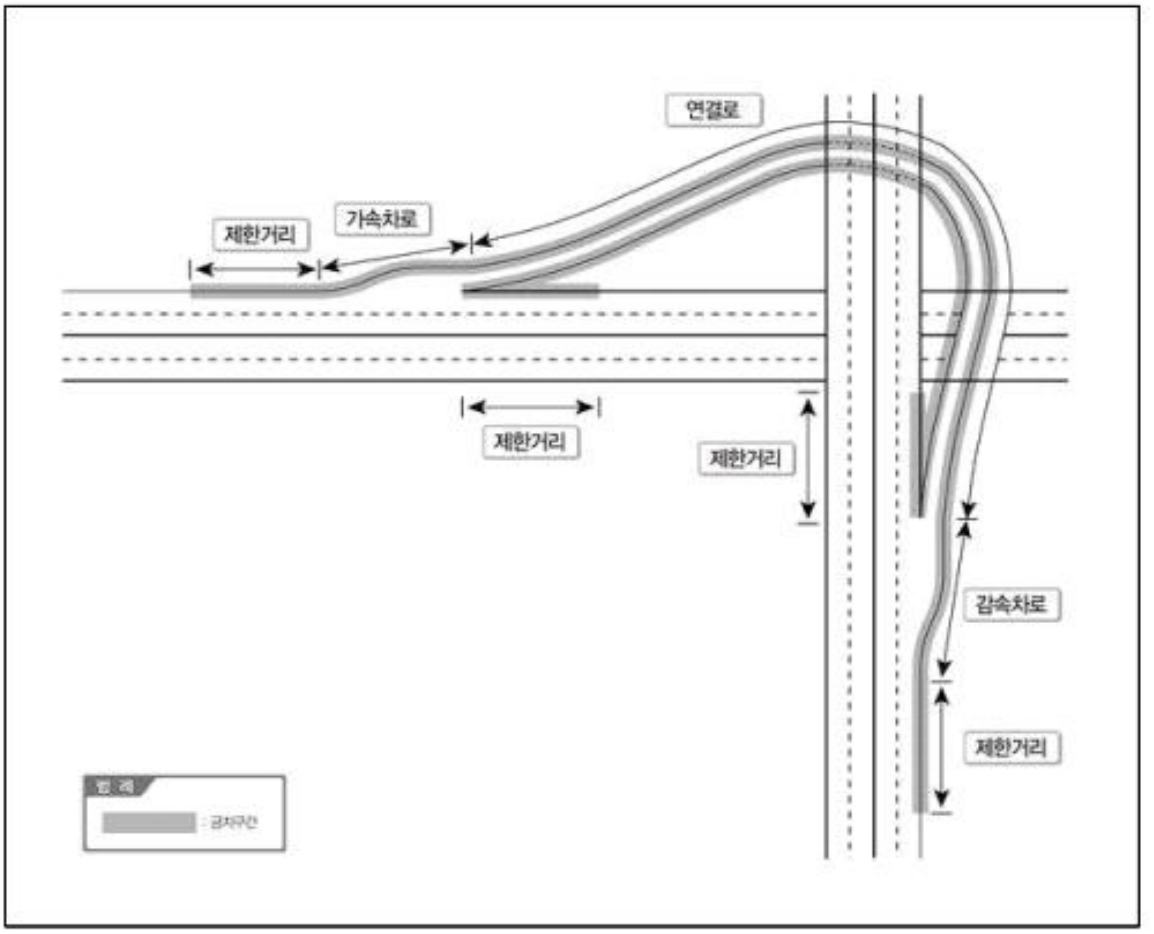
연결로
가속차로
제한거리
제한거리
제한거리
감속차로
제한거리
범례
: 금지구간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9조제1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의 경우

가.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1) 공단 진입로 등	-	40(25) [15]	15(10) [10]	65(45) [20]	20(15) [15]
2) 휴게소 및 주유소 등	-	40(25) [15]	15(10) [10]	65(45) [30]	20(15) [15]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25(15) [10]	10(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20]	
4) 사도·농로·마을 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10) [10]	10(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20대 이하	15(10) [10]	10(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20]	
	21대 이상 50대 이하	25(15) [10]	10(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20]	
	51대 이상	40(25) [15]	15(10) [10]	65(45) [30]	20(15) [15]
6) 주차장·건설기계 주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2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15) [10]	10(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20]	
	51대 이상	40(25) [15]	15(10) [10]	65(45) [30]	20(15) [15]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15) [10]	10(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20]	
	51대 이상	40(25) [15]	15(10) [10]	65(45) [30]	20(15) [15]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20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21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25(15) [10]	10(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20]	
	101가구 이상	40(25) [15]	15(10) [10]	65(45) [30]	20(15) [15]
9)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나. 측도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시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1) 가목1) 및 2)	-	10	3.5	15	5
2) 가목3)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3) 가목4)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4) 가목5)부터 7)까지	5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51대 이상	10	3.5	15	5
5) 가목8)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20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21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101가구 이상	10	3.5	15	5
6) 가목9)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다. 적용기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가목은 설계속도 80km/h 이상 기준이며, ( )는 60km/h, [ ]는 50km/h 기준임.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가목4)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6) 가목5)부터 7)까지 및 나목4)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가.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1) 공단 진입로 등	-	45 (30) [20]	15 (10) [10]	90 (65) [40]	30 (20) [20]
2) 휴게소 및 주유소 등	-	45 (30) [20]	15 (10) [10]	90 (65) [40]	30 (2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15]	10 (10) [10]	60 (40) [25]	20 (20) [20]
4) 사도·농로·마을 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10]	10 (10) [10]	40 (30) [15]	2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10]	10 (10) [10]	40 (30) [15]	2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10]	10 (10) [10]	60 (40) [15]	2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5 (10) [10]	90 (65) [25]	30 (20) [20]
6) 주차장·건설기계 주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15]	10 (10) [10]	60 (40) [25]	20 (20) [20]
	31대 이상	45 (30) [20]	15 (10) [10]	90 (65) [40]	30 (20) [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 (15) [10]	10 (10) [10]	40 (30) [15]	20 (2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15]	10 (10) [10]	60 (40) [25]	20 (20) [20]
	51대 이상	45 (30) [20]	15 (10) [10]	90 (65) [40]	30 (20) [20]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30 (20) [15]	10 (10) [10]	60 (40) [25]	2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20]	15 (10) [10]	90 (65) [40]	30 (20) [20]
9)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m)			

나. 측도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시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1) 가목1) 및 2)	-	10	3.5	15	5
2) 가목3)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3) 가목4)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4) 가목5) 및 6)	3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31대 이상	10	3.5	15	5
5) 가목7)	5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51대 이상	10	3.5	15	5
6) 가목8)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101가구 이상	10	3.5	15	5
7) 가목9)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다. 적용기준

1) 가목은 설계속도 80km/h 이상 기준이며, ( ) 는 60km/h, [ ] 는 50km/h 기준임.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가목5)부터 7)까지 및 나목4)·5)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연결 목적	② 점용기간
	점용장소 - 점용면적 (㎡)	
	공사 실시방법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도로 복구방법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삼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 ·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휴게소 · 주유소 · 공장 · 아파트 · 건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 재	→	허가서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허가번호	당초 허가기간
	② 연결 목적	
	점용장소 · 점용면적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연장 사유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삼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 · 주유소 · 공장 · 아파트 · 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 재	→	허가서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허가번호	허가기간
	② 연결 목적	
	점용장소 - 점용면적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변경내용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삼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내용 관계 도서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 재	→	허가서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연결 목적
	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연결 신청 장소
	③ 사업부지 장소
	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삼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2.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	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	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삼척시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결 개요	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도로의 연결지점
	사용 목적

	시공물량				미시공물량			
	시설명	단위	물량	사업비	시설명	단위	물량	사업비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1]

관 계 법 령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49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일반국도

2. 지방도

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부령)**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9., 2020. 3. 6.>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삭제 <2014. 12. 29.>
7.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8.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9.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0.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붙임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인

■ 의견제출자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3-158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3. 9. 22. ~ 2023. 10. 7. (16일간)
3. 말소(예정)일자 : 2023. 10. 10.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1	나.당사자	성명(명칭)	심재○
		주 소 (대장상주소)	상정리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상정리 7-4 주1 연면적(57.84㎡), 목조, 주택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33-570-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22.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연 락 처 : 033)570-3969